

의안번호	제 42 호
의결연월일	2004. 10.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10. 4

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2 호
----------	--------

제 출 일 자	2004. 10. 4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

○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제206조 ⇒ 지방세법 제9조의2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민원지적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원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사천시공원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제206조” 를 “지방세법 제9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 (점.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시장은 재해,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u>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제206조의</u>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3조 (점.사용료의감면) ①(현행과 같음)</p> <p>②----- ----- -----<u>지방세법 제9조의 2</u> ----- -----</p>

관 계 법 령 발 취

도시공원법

第6條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 ①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設置할 수 있으며, 그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할 수 있다.
②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을 管理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 "公園管理廳"이라 한다)는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의 管理를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8條 (都市公園의 占用許可) ①都市公園안에서 公園施設 이외의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伐採, 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의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의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4條 (入場料등의 徵收) ①公園管理廳과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管理하는 者는 都市公園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를 徵收하거나 公園施設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場料를 徵收할 수 있는 都市公園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公園施設을 設置한 것에 한한다.
③公園管理廳(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入場料 및 使用料의 金額과 그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公園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者중에서 민간자본으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第3項 但書 및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를 정한 때에는 이를 公園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5條 (占用料의 徵收) ①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第8條第1項 또는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綠地를 占用하는 者에 대하여 占用料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私有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金額과 그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